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16] <개정 2026. 2. 24.>

교통안전교육의 과목·내용·방법 및 시간(제46조제1항·제46조의2제1항·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)

1. 교통안전교육

교육 대상자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 방법
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	1시간	○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○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○ 안전운전 기초이론 ○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○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○ 어린이·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○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○ 친환경 경제운전의 이해 ○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자동차안전의 이해 ○ 자율주행과 미래교통	시청각

(비고)

1.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2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은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2. 특별교통안전교육

가.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

교육 과정	교육 대상자	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
음주 운전 교육	(1)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	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	12시간 (3회, 회당 4시간)	○ 음주운전 위험요인 ○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○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○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	강의·시청각·발표·토의·영화상영·진단 등
		최근 5년 동안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	16시간 (4회, 회당 4시간)	○ 음주운전 위험요인 ○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○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○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○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	강의·시청각·발표·토의·영화상영·진단·필기검사·과제작성

				참여	등
		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	48시간 (12회, 회당 4시간)	○ 음주운전 위험요인 ○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○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○ 음주운전 성향 진단 및 해설 ○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참여 ○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	강의·시청각·발표·토의·영화상영·진단·필기검사·과제작성·실습·상담 등
배려운전 교육	(2)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법 제73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		6시간	○ 스트레스 관리 ○ 분노 및 공격성 관리 ○ 공감능력 향상 ○ 보복운전과 교통안전	강의·시청각·토의·검사·영화상영 등
법규준수 교육 (의무)	(3) (1), (2)를 제외하고 법 제7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		6시간	○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○ 안전운전의 기초 ○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○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○ 운전유형 진단 교육 ○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	강의·시청각·토의·검사·영화상영 등

(비고)

1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
2. 위 표의 (1)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 횟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
가.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.

나. "최근 5년"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.

나.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

교육과정	교육 대상자	교육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
법규준수 교육 (권장)	(1)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	6시간	○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○ 안전운전의 기초 ○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○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○ 운전유형 진단 교육 ○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	강의·시청각·토의·검사·영화상영 등
벌점감경 교육	(2)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	4시간	○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○ 운전자의 마음가짐 ○ 교통법규와 안전 ○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	강의·시청각·영화상영 등

현장 참여 교육	(3)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(1)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	8시간	○ 도로교통 현장 관찰 ○ 음주 등 위험상황에서의 운전 가상체험 ○ 교통법규 위반별 사고사례분석 및 토의 등	도로교통현장 관찰·강의·시청각·토의·영화상영 등
고령 운전 교육	(4)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	3시간	○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○ 약물과 안전운전 ○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○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○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	강의·시청각·인지능력 자가진단 등

비고

1. 교육대상자가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·마목에 따른 의원·병원·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고령운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란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.
2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

3.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

교육 대상자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
법 제7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	2시간 (3시간)	(1)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에 관한 내용 (2)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(3)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(4)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(5)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	강의·시청각·영화상영 등

(비고)

1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
2. 위 표의 교육시간에서 괄호 안의 것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 적용한다.

4.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

교육 대상자	교육 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
법 제7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	2시간	(1)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(2) 약물과 안전운전 (3)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(4)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(5)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	강의·시청각·인지능력 자가진단 등

비고

1. 교육대상자가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·바목에 따른 의원·병원·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(3)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.
2.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3.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4. 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

5.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

교육 대상자	교육시간	교육과목 및 내용	교육방법
법 제73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	1시간	(1)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(2)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(3)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예방 필요성	강의·시청각 등

비고

교육과목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.